전자문서확인번호 A9V1-QFM1-IMOV-EV2N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

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

상호 또는 성명 *Trade Name or Registrant*	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
기기 명칭 *Equipment Name*	PXI-6232 Multifunction DAQ
기본모델명 *Basic Model Number*	PXI-6232
파생모델명 *Series Model Number*	
등록번호 *Registration No.*	KCC-REM-NAT-PXI6232
제조자/제조국가 *Manufacturer/ Country of Origin*	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/미국,헝가리,중국
인증연월일 *Date of Registration*	2011년(Year) 09월(Month) 07일(Date)
기타 *Others*	

위 기기는「전파법」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, Article 58-2 of Radio Waves Act.

2011년(Year) 09월(Month) 07일(Date)

국립전파연구원장

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

※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"적합성평가표시"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
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진위여부는 www.ekcc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※ 복사본은 상단 복사방지마크의 '원' 또는 '본' 글자가 사라집니다.

< 적합성평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>

전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기기가 유통 · 판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1.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는 해당 제품과 포장에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(전파법 제58조의2제6항)

○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, 2차 및 3차시 생산 · 수입 · 판매 또는 사용중지(1~2개월)

2.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, 파생모델명, 제조자,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)

○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 :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, 2차시 생산 · 수입 · 판매 또는 사용중지(2개월),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

○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: 1차,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시정 명령

3.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일부 부품을 무단변경 또는 제거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거나, 시험과정 중 기기의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보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○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4.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시험결과 부적합기기는 시정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유통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차시는 생산 · 수입 · 판매 중지 또는 사용중지(2개월), 3차시 적합성평가의 취소